

주요 내용

■ 非定型근로자 보호 대책의 개선방안■

□ 개념 및 현황

- (개념) 정형적인 근로형태를 벗어나는 근로자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
- (현황) 외환위기 이후 비정형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

□ 관련 논의 현황과 보호 대책 내용

- (논의 현황) 노사정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
- (주요 쟁점) 정규직 전환 의무화 여부,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한 규제 여부, 有期계약근로 제한 여부, 파견근로에 대한 제한 강화 여부 등
- (보호 대책 내용) 올해 중 관련 입법 정비를 위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노동부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능력개발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비정형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함

□ 평가 및 개선방안

- (순조로운 시행 전망) 사회안전망 확충과 능력개발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함에 따라 노사의 반발이 크게 나타날 부분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
- (바람직한 능력개발 확충) 단,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참여율 제고 방안 필요
- (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필요)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준하여 정책을 계획 · 실시하는 정책 주체로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자세 필요

현안 분석

비정형근로자 보호 대책의 개선방안

개념 및 현황

- '非定型근로자'란 정형적인 근로형태를 벗어나는 근로자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¹⁾임
 - 이에 대비되는 정형적 근로는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,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채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으며,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라고 정의될 수 있음
 - 비정형근로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로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도급 및 용역근로자, 호출근로자, 재택근로자, 가내근로자 등을 들 수 있음

< 비정형근로자의 유형과 개념 >

특 징	유 형	개 념
근로기간 짧음	短期間근로자	1년 미만 근무하는 임시근로자 및 일일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
근로시간 짧음	短時間근로자	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자
근로 제공 방식 다름	파견근로자	고용사업주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주가 상이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
	도급근로자	정해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근로자(일의 완성도에 따라 임금 지급)
	용역근로자	용역업체에서 일의 도급을 받아 도급을 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
	호출근로자	규칙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호출을 받은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
근로 제공 장소 다름	재택근로자	사용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
	가내근로자	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 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

1)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비정규근로자라는 용어를 대체하고,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개념으로, 정형근로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 벗어나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비정형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

-
- (현황) 외환위기 이후 비정형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
 - 외환위기 이전인 97년만해도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 및 일용 등 비정형근로자 비중이 45.9%에 머물렀으나, 99년에는 51.7%, 2000년 2/4분기 52.8%에 달함
 - 이러한 비정형근로자는 정형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심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
 - 이러한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경영계에서도 장기적인 근로조건 개선 노력과 권익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

보호 대책 논의 현황

- (논의 현황) 노사정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
 - 지난 4개월 동안 비정형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의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
 - 주요 이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확연히 달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간 상태임
 -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쟁점은 정규직 전환 의무화 여부, 유기계약근로 제한 여부, 파견근로에 대한 제한 강화 여부, 학습지 교사·골프장 캐디·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이 있음
- (보호 대책 마련)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올해 中 관련 입법 정비를 위해 노동부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능력개발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비정형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함
 - 원래의 노동부 안에서는 유기계약근로 기간에 대한 제한을 3년으로 연장하되,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연장·갱신할 경우에는 정형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나,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인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됨
 - 따라서 이번 보호 대책은 1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사회안전망 확충, 파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 및 적합한 훈련프로

그램 개발 보급·사이버 훈련 강화 등 능력개발 지원 확대 중심임

- 이외에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준근로자성을 인정해 보수지급,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금지, 산재보험 적용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

< 비정형근로자 보호 대책(안)의 주요 내용과 쟁점 >

	노동계	경영계	정부 대책(안)	비고
기본 입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호 강화로 정규직 대체 규제 • 고용 사유 및 기간 명시 • 계약 기간 종료시 정규직 전환 의무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경쟁력 제고와 노동 시장 유연화 우선 고려 • 정규직 전환 의무 반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사의 주장 절충 • 사회안전망 및 능력개발 지원 확대 중심 	
단시간 근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규직의 70%로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 신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행제도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書面근로계약 의무화 	
유기 계약 근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기근로계약 가능 업무 명시 • 사유 및 기간 제한(반복 갱신 금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상한 연장(1년→3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의 연장·갱신으로 총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화 •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연장 	유보
파견 근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견근로 가능 업무 및 사유 제한 • 동일업무 계속 사용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견근로 가능 업무 제한 철폐 • 파견근로기간 제한 철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번 보호 대책(안)에서는 관련 내용 없음 	
특수 고용 형태 근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행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습지 교사, 캐디, 보험 설계사 등에 대한 준근로자성 인정 	
사회 안전망 및 능력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대 사회보험 확대 • 소득불안정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조기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대 사회보험 확대 • 단, 관련 비용 고려 점진적 확대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수강지원 대상 확대, 직장인 국민연금 대상 확대 • 내년 적합한 훈련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사이버 훈련 강화 	

평가 및 개선방안

- 사회안전망 확충과 능력개발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함에 따라 노사의 반발이 크게 나타날 부분은 제외되어 있어 대책 시행은 원활히 이루어질 것임
 - 대체적으로 노사의 입장에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노사의 반발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음
 - 크게 쟁점이 될 수 있었던 유기계약근로 관련 대책은 정부 부처 내에서의 이견으로 인해 유보됨에 따라 노사의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음
 - 결국 이번 비정형근로자 보호 대책은 큰 무리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
- 능력개발 확충은 바람직하나,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훈련참여율 제고 방안이 필요함
 - 비정형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보호 대책으로 포함시킨 것은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고용가능성 제고를 통해 근본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
 - 그러나 단순한 수강장려금 지원 확대 등의 비용 보조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, 구체적인 훈련프로그램 및 내용 확충이 절실히
 - 내년부터 보급될 예정인 비정형근로자 대상 훈련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실히 하고, 이를 비정형근로자들이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
 - 사이버교육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, 대부분의 비정형근로자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며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므로, 동사무소를 통한 무료 교육 및 인터넷 접속 기회 확대 등의 부가 대책이 필요함
- 기본 방향 부재의 문제점은 여전히 노출됨
 - 노동부 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사간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적당히 양자의 주장을 절충한 안이 여전히 제시되고 있음에 따라,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대책으로 포괄되어,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큼
 - 따라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준하여 정책을 계획·실시하는 정책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됨

(홍성민 연구위원 hsanu@jri.co.kr ☎ 3669-4013)